

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8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가상자산시장 및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가.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 제1항제1호	3,000
나.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 제1항제2호	3,000
다. 법 제8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 제1항제3호	10,000
라. 법 제9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기록을	법 제22조	3,000

생성·보존 또는 파기하지 않은 경우	제1항제4호	
마.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22조 제1항제5호	3,000
바.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 제1항제6호	6,000
사.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·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·보고한 경우	법 제22조 제1항제7호	6,000
아. 법인인 자가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·조사·명령·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22조 제1항제8호	10,000
자.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·조사·명령·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22조 제1항제8호	6,000 다만, 임직원의 경우에는 2,000만원으로 한다.